

종합

위안부·징용피해자 소송지원 “아시안단체 연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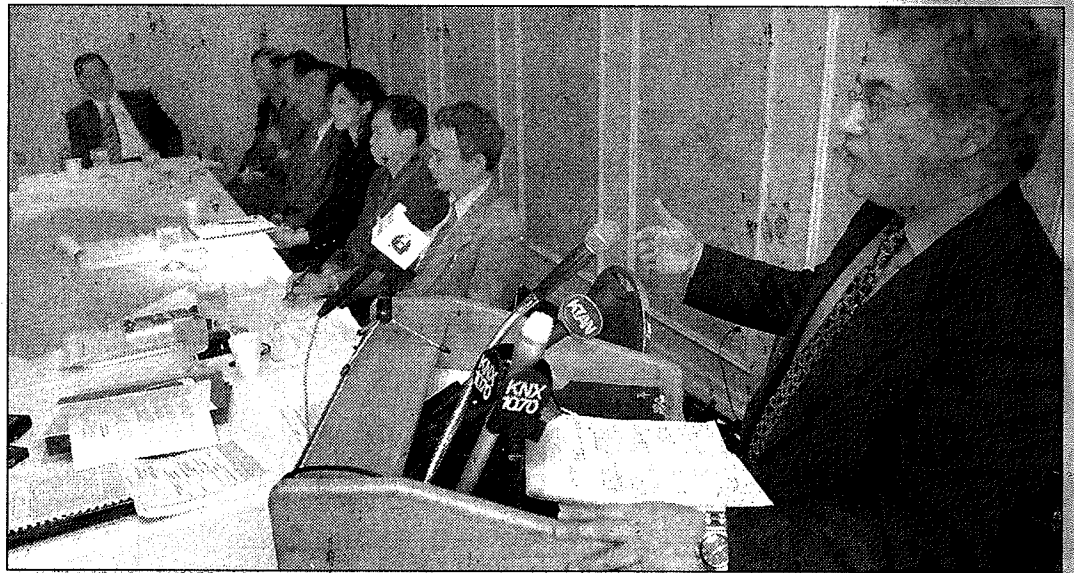
정재원씨 케이스 변호인단 밝혀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구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본 징용피해자 정재원(79)씨의 일본 다이헤이오사(구 오노다) 피해보상 소송을 맡고있는 베리 피셔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연대가 구축됐다”고 밝히고 “이 연대에는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변호사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제연대는 일제 만행을 입증할 자료발굴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본 NGO그룹의 리더 아리마수 켄씨는 “일본에서는 50여개 단체가 40여개의 각종 위안부 및 징용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금전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내



정재원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베리 피셔 변호사가 징용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달중 북한을 방문해 관계당국의 협조를 받아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정재원씨(79)가 일본 다이헤이오사(구 오노다)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 피터 릭크만 판사가 피고측의 기각요청을 29일 거부한 것(본부 30일자 3면보도)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피해보상 소송에 숨통을 열어준 반면 피고인 일본기업들에겐 큰 타격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2차대전중 일본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과 중국인 등 아시아인들이 나치에 의해 핍박받았던 유대인 피해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과 ▲이 소송이 미국의 정치외교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며 일본측을 두둔하는 미행정부의 주장이 무순됨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릭크만 판사가 전쟁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년까지 손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법 354.6조항(헤이든법)이 위헌이라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역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황성락 기자>